

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
(의안번호 제454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3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2. 16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12. 23

고 성 군 수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재정사유
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토지·시설물 취득·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지원사업중 기본 지원사업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중에서 어촌계나 마을명의로 취득·관리가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·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위함.

3. 주요골자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 취득원칙, 다만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어촌계나 마을단위(이하 "단체"라 한다.) 명의로도 취득가능 (안 제3조제1항)
- 단체명의 시설물의 취득시는 지원사업 총액의 50%초과 못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가능 (안 제3조제2항)
-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직영 시행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해당단체 보조사업 시행가능
 -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준용(안 제4조제1~2항)
-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, 전매,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조치 (안 제5조)
-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자가 수행 (안 제8조)
- 단체명의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위한 자체기금 조성 (안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, 보전관리 등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 단체명의로 취득, 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 중 총액의 50% 기준설정이 불분명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입법예고 공고 기간중 이의신청 내역과 건수는
- 답 : 이의신청 건수는 2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"안 제3조제2항"을 삭제와 기준고성군으로 동기된 재산을 소급 처리요구 사항임.
- 문 : 안 제3조제2항 중 50% 기준설정 배경은
- 답 : 어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준한것이며 조정위원회 협의결과 50% 설정하였음.

- 6. 토 론 : "안 제3조제2항"과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"제3조제2항의 사업증"을 삭제키로 협의

7. 심사결과

-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("안 제3조제2항"과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"제3조제2항의 사업증"을 삭제키로) 수정가결